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11월 12일(목)까지, 시행: 11월 13일(금))

올바르지 않은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1. 적용기간 10월 14일 (수) ~ 별도 해제 시까지

2. 적용대상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단, 집단 감염에 취약하므로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KF94, KF80, KF-AD 등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단,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 불가)

착용법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새소식 및 고시/공고 참고